

# 카르텔規制와 産業政策 (1)

李 奎 億

## 目 次

- I. 序 言
- II. 카르텔 規制의 法制
- III. 公共의 利益
- IV. 一定한 去來分野
- V. 競爭의 實質的 制限
- VI. 不況카르텔
- VII. 合理化카르텔
- VIII. 시멘트 共販制
- IX. 不況産業의 構造調整
- X. 結 言

## I. 序 言

우리나라는 1981年 4月 1일부터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하 「獨占規制法」

으로 칭함)을 施行함으로써 본격적인 經濟秩序法을 운용하게 되었다. 「憲法」第120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經濟秩序는 個人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추구하기 위하여 國家는 必要한 範圍內에서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하며 특히 獨寡占의 弊端은 적절히 規制·調整하도록 되어 있는바 「獨占規制法」은 이러한 憲法精神을 具體化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法은 1976年 이래 施行되어온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하 「物價安定法」으로 칭함)을 승계한 것으로서 自由市場經濟의 바탕 위에 民間主導로 經濟를 運用하기 위한 法的 制度를 마련하고 있다. 이 法은 獨占의 地位의 濫用, 明示的·暗默的 共同行爲, 企業結合, 不公正去來行爲, 再販賣價格維持등에 관한 規制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本稿에서는 同法에서 許容對象으로 하고 있는 不況克服 및 産業合理化를 위한 共同行爲에 局限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筆者(1977, 1979)는 이미 카르텔(cartel)이

筆者: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 筆者는 本稿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여준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室, 韓國洋灰工業協會 및 日本公正取引委員會에 深甚한 謝意를 드리는 바임.

\* 本稿의 VIII, IX, X節은 第2部로서 本誌 가을號에 掲載될 것임.

라고 불리는 共同行爲의 長短點을 分析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카르텔의 規制方向을 제시한 바 있다. 「獨占規制法」의 施行으로 일단 그러한 規制裝置는 마련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現行法制를 分析함과 아울러 시멘트 共販制度를 事例로 하여 適用除外카르텔의 運用現況을 産業組織(industrial organization)政策 및 産業構造(industrial structure)政策的 觀點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 II. 카르텔 規制의 法制

「獨占規制法」第11條에 의하면, 事業者는 契約·協定·決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른 事業者와 不當한 共同行爲(undue concerted activities)를 해서는 안되며 經濟企劃院에 登錄되는 경우 즉, 經濟企劃院長官이 認可하는 한에서만 許容된다. 共同行爲의 不當性 判別

〈表 1〉 不當한 共同行爲

行爲 類型(法11條)	行 爲 內 容 (審査基準)
1. 價格의 決定·維持·變更	① 構成事業者의 最低販賣價格, 標準價格, 價格引上率(幅)等を 決定하거나 價格設定基準을 定하는 行爲 ② 具體的인 數值·係數 等を 使用해서 構成事業者에 共通의 價格算定方法을 設定하는 行爲 ③ 利潤幅, 리베이트, 割引率, 手數料等 實質的으로 價格의 構成要素로 되는 것의 限度를 定하는 行爲 ④ 構成事業者가 供給하는 商品 또는 用役に 관한 平均原價, 同一利潤率등 一律的인 方法으로 原價計算을 指導하는 行爲
2. 販賣條件·代金支給條件의 決定	① 競爭事業者 또는 去來相對方을 不當하게 差別하거나 그 事業活動을 不當하게 制限하는 去來條件이나 支給條件을 定하는 行爲
3. 生産·出庫·販賣의 制限	① 構成事業의 生産·販賣等の 數量을 決定하거나 그 數量限度를 暗示하는 基準設定行爲 ② 原材料의 購入(輸入推薦 및 物量配定에 의한 制限包含)이나 設備의 運轉制限等に 의해 生産·販賣등의 數量을 制限하는 行爲
4. 去來地域·去來相對方의 制限	① 構成事業者의 販賣地域을 制限하는 行爲 ② 다른 構成事業者의 去來處와 新規로 去來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顧客의 確保를 制限하는 行爲 ③ 受注의 配合 또는 受注豫定者 혹은 受注豫定者의 選定方法을 決定하는 行爲 ④ 入札等の 參加를 制限하는 行爲
5. 設備의 新·增設 制限	① 設備의 新設·增設·導入·運轉등을 制限하거나 設備를 共同으로 廢棄하도록 하는 行爲 ② 設備의 新設·增設 및 裝備導入 등에 따른 技術의 開發 또는 利用을 制限하는 行爲 ③ 構成事業者의 設備投資의 限度를 定하는 行爲
6. 商品 種類·規格의 制限	① 商品 또는 用役의 種類·品質·規格·尺度·仕樣 등에 관하여 制限하는 行爲

基準은 12條에 規定되어 있듯이 ‘公共의 利益에 반하여 일정한 去來分野의 競爭을 실질적으로 制限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 基準은 事業者 團體에 의한 共同行爲에 대하여도 그대로 適用된다(18條).

그러나 共同行爲의 內容이 위에서 말한 登錄對象에 해당되더라도, 不況克服이나 産業合理化등의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경우(12條但書)와 특별한 法律에 의하여 施行되고 있는 경우(47條), 無體財產權의 行使行爲(48條) 및 일정한 組合의 行爲(49條)에 대하여는 11條의 適用이 排除되는 適用除外카르텔을 認定하고 있다.

不況카르텔 및 合理化카르텔의 要件 및 限界는 각각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施行令」(이하 「施行令」으로 칭함)의 19條와 20條에 規定되어 있으며 共同行爲審査 全般에 관한 指針은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登錄審査基準」(公正去來室 1981.6 : 이하 「審査基準」으로 칭함)에 마련되어 있는데 本稿에서는 不況카르텔과 合理化카르텔만을 對象으로 하기로 한다.

登錄對象이 되는 共同行爲는 ① 價格의 決定·維持·變更 ② 販賣條件·代金支給條件의 決定 ③ 生産·出庫·販賣의 制限 ④ 去來地域·去來相對方의 制限 ⑤ 設備의 新·增設 制限 ⑥ 商品種類·規格의 制限으로서 그 內譯은 <表 1>에 게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販賣條件·代金支給條件의 決定에 관한 共同行爲로서 이를 ‘競爭事業者 또는 去來相對方을 부당하게 差別하거나 그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制限하는 去來條件이나 支給條件을 정하는 行爲’로 定義함으로써 價格의 共同決定과 類似한 카르텔

고유의 行爲로 보지 않고 集團的 價格差別(collective price discrimination)이나 集團排斥(boycott)과 같은 不公正行爲를 指稱하고 있다. 그렇다면 不當한 不公正去來行爲는 15條에 의하여 그 자체가 違法이므로 登錄對象조차 될 수 없는 것이므로 「審査基準」에서의 定義를 共同價格行爲에 並置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또 다른 特記事項은 設備의 新·增設制限에 設備의 共同廢棄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는 産業政策과 獨占規制法과의 關係를 檢討하는 K節에서 다루기로 한다.

登錄對象에서 除外되는 共同行爲는 事業者 團體의 固有活動 중 단순한 指導·教育·情報提供 및 弘報 등으로서 구체적으로는 ① 個別構成事業者에 대한 原價計算 指導 및 教育(價格引上을 暗示하는 統一的인 原價計算指導行爲는 除外) ② 需要動向에 관한 공개된 統計資料에 의거한 需給情報의 提供 ③ 公共機關이 設定한 規格 또는 産業合理化를 위한 規格 등의 自主的 基準의 普及 ④ 虛偽誇大表示 및 廣告의 排除를 위한 自主的 基準의 設定·普及 ⑤ 政府나 民間調査機關의 資料의 蒐集·提供 ⑥ 過去の 資料에 의거한 將來 需要豫測의 作成·公表 ⑦ 個別構成事業者에 대한 經營指導 ⑧ 共同的 技術研究 ⑨ 對政府의 涉外活動 ⑩ 國際機關과의 經濟情報交流活動 등이다.

例示된 열가지 行爲를 보면 價格이나 數量 등 市場行爲의 決定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共同技術研究는 經費·技術·規模의 필요성 때문에 각 企業의 競爭的 研究로써 達成될 수 없는 成果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社會的 利益을 增進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研究參與에 관한 進入障壁, 研究結果의 排他的 特許 등 獨占

化的 條件이 排除되어야 하며<sup>1)</sup> 研究結果에 관한 價格行爲에 있어서 共同行爲의 可能性이 除去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상의 두 가지 基準에서 보면 企業相互間에 過去과 將來의 價格·去來條件·數量·原價·工程·去來相對方·去來地域 등에 관한 情報를 교환하는 情報協約(information agreement)에 대한 우리나라 法의 立場은 분명하지 않다. 즉, 11條에서는 이것이 明白한 登錄對象이 아닌 반면 「審査基準」에서는 除外對象으로 例示되어 있지 않다. 情報協約은 長期價格競爭을 阻害하지 않으면서 市場의 透明性(market transparency)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公共利益에 符合된다는 見解<sup>2)</sup>가 있는 반면, 모든 種類의 企業間 意思疏通은 談合의 前提條件이 되므로 그 자체가 當然 違法(illegal per se)이라는 見解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共同의 技術研究와 市場需給情報의 提供이 許容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情報交換이 직접 市場에 영향을 미치는 共同行爲로 연결되지 않는 한에서는 許容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明文規定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論議하지 않기로 한다.

### Ⅲ. 公共의 利益

公共의 利益(public interest)은 獨占規制法

1) 共同技術研究에 參與할 수 있는 能力을 보유한 競爭者를 故意的로 排除하고 研究結果를 參與企業間에만 專有·活用함으로써 競爭者를 市場으로부터 驅逐하려는 行爲를 가리키는 것임.

2) Richardson(1967)의 見解가 대표적임.

3) OECD(1976, 1978) 참조.

의 目的을 이해하고 適用除外카르텔을 認可함에 있어서 基本的 概念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法에 明示한 英國과 그렇지 않은 日本의 法例를 檢討함으로써 理解를 돕고자 한다.

#### 1. 英國의 法例

英國의 「制限的 去來貫行法」(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56, 1968)<sup>3)</sup> 第21條에서는 소위 公益適合性(seven gateways)이라고 불리는 7가지의 카르텔禁止 適用除外를 規定하고 있다:

① 該當 財貨의 性格에 비추어 볼 때 財貨의 消費·設置·使用과 관련된 危害로부터 大衆을 保護하기 위하여 필요한 制限

② 競爭制限을 排除한다면 該當 財貨의 購賣者·消費者·使用者로서의 大衆에게 구체적이며 顯著한 惠澤이나 利點이 拒否되는 것

③ 共同行爲 參加者가 아닌 者의 競爭防止 및 制限措置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合理的인 制限

④ 財貨의 取得 또는 供給事業의 壓倒的 部分을 支配하고 있는 第3者로부터 財貨를 取得하거나 또는 그에게 財貨를 供給함에 있어서 公正한 去來條件을 協商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⑤ 共同行爲를 排除한다면 該當地域의 일반적인 失業水準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惡影響을 주게 될 것

⑥ 共同行爲를 排除한다면 國家全體 또는 當該産業의 전체 輸出事業과 관련하여 輸出量이나 稼得額에 顯著한 減少를 초래할 수 있는 것

⑦ 어떠한 關聯 去來分野나 産業에 있어서도 競爭을 直接·間接으로 현저하게 低下시키

지 않을 것<sup>4)</sup>

즉, 消費者保護, 對抗카르텔(countervailing cartel), 失業防止, 輸出維持 등 구체적인 效果를 公益要件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效果가 期待되더라도 共同行爲로 인하여 발생할 當事者 以外の 他人에 대한 不利益과의 均衡關係에 있어서 競爭制限이 不合理해서는 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sup>5)6)</sup>.

## 2. 日本의 法例

우리나라의 「獨占規制法」과 상당히 類似한 體系를 갖고 있는 日本의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1947年 制定; 1977年 10次 改正, 이하 「獨禁法」으로 칭함)에서는 2條 6項에서 事業者가 다른 事業者와

공동으로 公共의 利益에 반하여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競爭을 실질적으로 制限하는 行爲를 '不當한 去來制限'으로 定義하고 3條에서 이를 禁止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처럼 '公共의 利益'을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몇 가지 學說이 나오게 된다. 이 概念의 意義에 관하여는 ① 國民經濟全體의 利益으로 보는 立場과 ② 自由競爭秩序의 維持라고 보는 立場으로 大別되는데 後者は 다시 「獨禁法」1條의 目的規定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1) 出雲井(1953) 등은 公共의 利益은 단지 消費者의 利益만은 아니고 生産者와 消費者를 포함하는 國民經濟 全體의 利益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들의 論據로서는 「獨禁法」1條에서 '이 法律은……一般消費者의 利益을 確保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民主的이며 健全한 發達을 促進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한 法律의 目的을 들고 있지만, 産業保護가 目的이라고 한다면 二次大戰後 經濟的 民主主義의 定着이라는 日本 「獨禁法」制定當時의 精神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2) 根岸(1969)와 實方(1970)은 公共의 利益은 순수하게 自由競爭秩序의 維持만을 의미한다는 見解를 밝히고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獨禁法」은 競爭制限의 效果를 갖는 行爲를 除去하고 그럼으로써 競爭條件을 維持하는 것을 固有의 目的으로 하여 行爲類型을 特定하여 規制하고 있으므로 그 定義規定인 條項을 해석함에 있어서 公共의 利益을 自由競爭秩序違反보다 넓은 意味로 理解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主張은 「獨禁法」1條에서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秩序의 維持→一般消費者의 利益確保→國民經濟의 民

4) ⑦項은 1968年 改正에 의하여 추가삽입됨.  
 5) 英國의 Fair Trading Act(1973)는 주로 企業合併등 獨占化規制內容을 담고 있는데 同法의 第84條 1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公共의 利益」을 判別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5가지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① 國內供給者間에 有効競爭을 維持·促進시키는 것  
 ② 供給되는 財貨나 用役의 價格·品質·多樣性 등에 관련하여 國內 消費者·購買者·기타 使用者의 利益增進  
 ③ 競爭을 통한 價格低下·新技術 및 新商品의 開發, 使用의 增進과 概存市場에 대한 새로운 競爭者의 進入促進  
 ④ 國內産業 및 雇傭의 均衡의 分配의 維持·向上  
 ⑤ 外國市場에 있어서 國內生産者 및 供給者에 의한 競爭의 活動의 維持·增進  
 6) 濠洲의 Trade Practices Act(1965) 第50條 1項에서 도 이와 유사하게 公共의 利益을 判別할 때 고려하여야 할 6가지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① 消費者·被雇傭者·生産者·分配者·輸入業者·輸出業者·自營事業者·投資家의 必要와 利益  
 ② 小企業의 必要와 利益  
 ③ 새로운 企業의 助長  
 ④ 勞動·資本·材料·生産施設·産業技術·기타 資源의 完全하며 效率的인 利用 및 分配를 달성할 必要性  
 ⑤ 國內外 市場의 需要를 최선으로 充足시킬 수 있는 質·量·價格의 財貨와 用役을 效率的이며 經濟的인 手段에 의하여 生産·提供·處理·配分할 必要性  
 ⑥ 國內外 生産者 및 輸出業者의 海外競爭力

主的이며 健全한 發展이라고 하는 目的의 主體的 把握을 絶여하고 있다.

(3) 公共의 利益을 自由競爭秩序維持→一般消費者的 利益確保라고 보는 見解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正田(1968, 1981)은 公共의 利益을 經濟的 從屬關係를 規約하는 法의 理念으로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經濟法은 市民法에 있어서의 抽象的·形式的인 平等關係가 초래한 實質的 不自由·不平等을 經濟的 從屬者인 人間으로서의 基本權을 確保함을 目的으로 하여 規制하는 것이며, 그러한 經濟的 從屬者의 基本權을 確保하기 위하여 國民經濟 需給의 持續的 調整을 指向하여 民主的으로 構成한다는 것에 公共利益의 의미가 있다. 이 주장은 「獨禁法」의 社會法的 側面은 강조하지만 競爭秩序維持를 통한 消費者 保護라는 「獨禁法」固有의 理論을 把握하기에는 불충분하며 公共의 利益을 獨禁法 固有의 概念으로서가 아니라 막연한 社會法的 理念으로 보기 때문에 公共의 利益이라는 概念을 이용하여 適用除外의 限界를 設定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다음으로 丹宗(1976)과 今村(1978, 1980)은 現代의 高度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有効競爭을 가능하게 하는 條件을 維持하는 것이 公共의 利益에 合致하며, 또 消費者를 이롭게 하는 價格競爭은 동시에 有効需要를 환기하여 資本主義的 生産關係의 機能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假說은 自由競爭秩序의 維持→一般消費者的 利益保護, 나아가 國民經濟의 民主的이며 健全한 發展이 公共의 利益이라는 것으로서 自由競爭의 市場機能의 暢達을 통하

여 經濟的 民主主義와 經濟活動의 效率性·進歩性을 이룩하려는 獨占規制法의 一般의 性格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公共의 利益'에 관한 여러가지 學說은 그대로 '公共의 利益' 概念의 法的 性格에 移延되는데, 위와 같은 丹宗과 今村의 '公共의 利益' 概念에 妥當性을 부여한다면 모든 競爭制限行爲는 일단 금지되지만 '一般消費者的 利益=國民經濟의 民主的이며 健全한 發達'에 반하지 않는 限度內에서 違法性이 소멸될 수 있다는 '違法性阻却事由說'을 채택하게 될 것이며, 또한 公共의 利益과 適用除外 規定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一部 確認說에 입각하여 把握하게 된다<sup>7)</sup>. 즉, 競爭의 實質的 制限이 행해지고 있더라도 一般消費者的 利益에 반하지 않든지 오히려 이를 增進시키게 되면 違法性이 阻却되어 「獨禁法」의 適用이 除外될 수 있다고 한다. 適用除外는 「獨禁法」上 본래적으로 違法性이 소멸되는 本來的 適用除外와 「獨禁法」의 原理上 허용될 수 없지만 다른 긴요한 특별한 經濟政策目標와의 調整上 一時的·例外的으로 許容되는 後退的 내지 例外的 適用除外로 區分된다. 前者의 예로는, 自然獨占到에 固有한 行爲, 一定한 組合의 行爲, 無體財產權의 行使行爲를 指摘할 수 있으며 後者의 例로서는 不況카르텔, 合理化카르텔 및 特別法에 의한 共同行爲 등이다.

### 3. 韓國의 法例

우리나라의 「獨占規制法」에서도 日本의 「獨禁法」과 마찬가지로 '公共의 利益'을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審査基準」에 보면 公共의 利益에 반하는지 여부는 ① 競爭의

7) 日本 經濟法學會 編(1976) 參照.

實質인 制限行爲의 與否와 ② 一般消費者的 利益에 현저하게 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決定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基準은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의 促進→消費者保護 及 國民經濟의 均衡의 發展이라는 法的 窮極의 目的<sup>8)</sup>에 符合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筆者는 丹宗과 今村이 日本의 「獨禁法」을 해석한 것과 같은 立場을 우리나라의 「獨占規制法」에 대하여 취하고자 한다. 「獨占規制法」이 制定된 우리나라의 經濟社會의 背景에 비추어 볼 때 競爭을 目的 的 手段으로서 해석해 야 된다는 筆者의 見解는 妥當性을 갖는 것으로 믿는다.

## Ⅳ. 一定한 去來分野

### 1. 市場의 範圍設定

競爭制限 與否를 論議하려면 우선 競爭이 成立할 수 있는 觀念的 前提概念으로서 市場 즉, 「一定한 去來分野」의 存在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여 時間과 空間을 초월하고 모든 商品을 전부 망라해서 競爭을 云謂한다는 것은 無의미하므로 결국 競爭이 行해지는 市場의

範圍를 確定하기 위하여는 商品的·地理的·時間的 要素가 고려되어야 한다<sup>9)</sup>.

이들 세 가지 市場要素는 相互關係를 통하여 市場의 範圍를 變化시키는데, 예컨대 同質商品이라도 地理的 遠隔性 때문에 競爭關係를 갖지 않던 것이 交通手段의 發達로 同一市場內의 競爭商品으로 될 수 있으며, 또한 過去에는 다른 種類의 商品이었지만 技術發達에 의하여 그 用途가 새로이 開發됨에 따라 현재에는 同種商品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러나 獨占規制法의 意味에서의 市場은 위에서 말한 時間的 要素가 이미 반영된 상태를 대상으로 하므로 결국 地理的 要因과 商品的 要因만이 고려된다.

地理的 市場의 判定基準은 製造業者나 供給者의 位置 및 規模, 販賣部門의 發達정도, 輸送手段과 運賃의 관계, 消費者의 慣習 등이 포함되어야 하겠으며, 이와 유사하게 去來段階에 따라 下部市場을 區分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商品의 特性和 用途, 獨自인 加工處理設備, 顧客과 價格의 相異性, 價格變動에 대한 反應 등을 고려하여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市場의 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去來對象인 商品市場의 境界를 設定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存在하는 수많은 商品原素間에는 다소간 代替性이 있으므로 어느 範圍까지를 同一한 商品市場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代替性 정도에 대한 判定基準을 가능한 한 提供하려는 試圖로서 세 가지를 指摘할 수 있다<sup>10)</sup>.

첫째는, 機能的 代替性(functional substitutability)理論으로서 商品分化가 進行되는 狀況에서는 同一한 品質·性格의 商品間에도 商品

8) 第1條: 이 法은 事業者의 市場支配의 地位의 濫用과 過度한 經濟力의 集中을 防止하고, 부당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하여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을 促進함으로써 創意的인 企業活動을 助長하고 消費者를 보호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9) 獨禁法에 있어서 市場의 概念·意義·範圍設定 등에 관한 最近의 論議는 Areeda and Turner(1978), Horowitz(1981), Elzinga(1981), Werden(1981)을 參照.

10) 日本經濟法學會編(1976) 및 Areeda and Turner(1978) 등을 참조.

의 同一性を 喪失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消費者의 嗜好·趣味등에 따라 異種商品間에도 用途의 同一성이 있게 되므로, 결국 代替性的의 判定基準은 반드시 品質·性格의 同一성에 의존하지 않고 商品間的 機能的 代替性(用途의 同一性)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用途의 同一性’은 각 商品의 本質의 共通性·經濟的 利用目的·價格 등에 의하여 消費者 자신에게 等價的 需要를 야기시킨다고 생각되는 商品間的 性格을 말한다. 그러므로 商品分化가 현저한 경우에는 品種·品質의 同一성이 있더라도 機能的 代替성이 없으면 同一商品市場을 構成하지 않는다.

둘째는, 需要의 交叉彈力性(cross-elasticity of demand)理論으로서 이것은 機能的 代替性이라는 抽象的 水準을 補充하기 위하여 經濟學的 概念을 導入한 것이지만 역시 交叉彈力性 자체의 測定이 곤란하며 비록 測定이 용이 하더라도 商品市場의 境界設定은 여전히 恣意的으로 된다<sup>11)</sup>.

세째, 合理的 交換可能性(reasonable interchangeability)理論은 이상 두가지 理論의 妥當한 論據를 유지하면서 理論의 精密性은 약하지만 실제의 商品分類에 관한 ‘現實的’ 判斷基準을 提示하려는 것이다. 즉, 市場의 範圍를 決定하는 것은 商品의 用途로서 여러 종류의 商品이 같은 最終用途에 사용되며 이들 商品間에 ‘合理的’ 交換可能性이 있다면 物理的 同一성이나 價格의 同一性 등 代替성이 完全하지 않더라도 同一商品市場을 構成한다.

## 2. ‘一定한 去來分野’의 定義

「獨占規制法」2條 6項은 위에서 언급한 理論을 反映하여 ‘一定한 去來分野’를 ‘去來의 客體別·段階別 또는 地域別로 競爭關係에 있거나 競爭關係가 成立될 수 있는 分野’로 定義하고 있으며 「審査基準」에서는 이를 좀더 具體化하여 一定한 去來分野의 範圍를 去來客體別로 競爭關係가 成立하는지 與否에 따라 判斷하되 그 範圍의 制限이 필요한 경우에는 去來段階別 또는 去來地域別로 區分하여 判斷하도록 하고 있다<sup>12)</sup>.

去來客體別 競爭關係의 成立與否는 同質 또는 類似한 商品인지의 與否에 따르는데, ① 一般的인 商品分類 ② 當該 商品의 機能 및 效用 ③ 當該 商品의 生産工程의 類似性 ④ 去來相對方의 特性을 감안하여 決定하며, 特定한 制限된 地域에만 關係를 갖는 경우에는 ① 需要層의 地域範圍 ② 供給者의 地域範圍 ③ 對象商品의 移動性을 고려하여 地域을 區分한다. 또한 商品의 去來가 特定段階에만 關聯되는 경우에는 生産·都賣·小賣 또는 特殊한 段階로 區分하여 判斷한다.

## V. 競爭의 實質的 制限

「獨占規制法」12條는 ‘公共의 利益에 반하여 一定한 去來分野의 競爭을 실질적으로 制限하게 되는’ 共同行爲를 ‘不當한 共同行爲’로 지칭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公共의 利益’과 ‘一定한 去來分野’의 의미를 分析하였으므로

11) 이 問題에 대한 詳論은 拙著(1977) 第3章 參照.

12) 美國聯邦大法院에서 商品市場의 境界를 확정하기 위한 要因으로서 고려하는 것은 當該製品の 特性과 用途·獨特한 生産設備·個別顧客·別個의 販賣店·産業界 또는 大衆의 認識 등이다.



아래에서는 ‘競爭의 實質的 制限’을 檢討함으로써 共同行爲의 ‘不當性’要件에 대한 論議를 끝맺기로 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一定한 去來分野의 競爭은 當該 去來分野를 構成하는 去來主體의 自由로운 競爭機能의 行使가 총합되어 形成된 競爭의 狀態이므로 競爭의 制限은 當該 市場全體에 걸쳐 形成되어 있는 秩序로서의 競爭의 機能이 制限되는 것을 뜻하게 된다. 그러므로 共同行爲에 의한 一定한 去來分野의 競爭制限은, 共同行爲→當該 去來分野의 構成員에 대한 自由로운 競爭機能의 制限→이들 構成員을 포함하는 當該 去來分野의 競爭狀態의 變化→이에 수반되는 當該 去來分野 構成員全體에 대한 自由로운 競爭機能行使의 制限이라는 形態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不當한 共同行爲는 法 12條에 의하여 一定한 去來分野의 競爭의 ‘實質的’ 制限을 要件으로 하므로, 一定한 共同行爲에 의하여 事業者의 自由로운 競爭機能의 行使가 制限되더라도 그것이 個別事業者의 競爭機能의 制限에만 그친다면 問題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위와 같은 連鎖反應의 最終效果가 當該市場全體에 걸쳐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共同行爲가 競爭의 實質的 制限으로 연결되려면 當該 行爲에 의하여 競爭의 機能을 有效하게 發揮시킬 수 없게 하는 힘을 形成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 힘은 市場을 支配할 수 있는 힘으로서 市場內 構成員들은 그들의 競爭機能을 자유롭게 行使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競爭의 實質的 制限은 「市場支配力 (market-dominating power)」의 形成으로서 把握되는 것이다.

「審査基準」에서는 競爭의 實質的 制限을 ‘競

爭自體가 減少하여 特定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그 意思로 어느 정도 자유로이 價格·數量·品質 및 기타 條件을 左右함으로써 市場을 支配할 수 있는 狀態를 초래하는 것’으로 定義하고 있으므로 위의 論理에 符合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볼 때 競爭의 實質的 制限은 競爭의 實効性있는 制限과 같은 意味로서, 有效한 競爭을 기대하는 것이 不可能한 狀態 즉, 一定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競爭의 狀態가 變質되어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는 狀態를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市場支配力은 市場을 ‘支配할 수 있는’ 힘이 지 市場을 ‘支配하고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原因規制의 論理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審査基準」에서 檢討事項을 蓋然形으로서술하고 있는 것에도 나타나 있다. 즉, 競爭의 實質的 制限與否는 具體的 事例別로 판단하되 ① 當該業種의 特性(企業競爭力과 産業의 狀況) ② 市場狀況(통상의 需給狀況에 顯著的한 變動을 가져올 것인지 與否와 통상의 價格變動趨勢에 비하여 價格의 硬直 또는 급격한 變動을 가져올 것인지 與否) ③ 他事業者의 進入이나 活動을 不當하게 制限할 것인지 與否 ④ 去來相對方의 選擇權 등을 綜合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Ⅴ. 不況카르텔

### 1. 不況카르텔의 意義

「獨占規制法」12條 但書의 不況카르텔(reces-

sion cartel)은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더라도 不況克服의 부득이한 事由가 있을 때 認可해 주는 共同行爲인 것이다. 이것은 競爭制限의 共同行爲에 대한 適用除外이므로 결국 法第11條에서 原則的 禁止對象으로 하고 있는 ① 價格카르텔 ② 去來條件카르텔 ③ 數量카르텔 ④ 販路카르텔 ⑤ 設備制限카르텔 ⑥ 規模카르텔의 6가지를 必要한 範圍內에서 行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와 같이 볼 때 不況카르텔은 根本的으로 競爭者間的 競爭을 排除하고 生産量의 共同調整 등을 통하여 價格과 收益性을 維持시키려는 獨占의 한 形態이므로 價格機構의 資源配分機能을 達成하기 위하여 産業組織의 競爭的 性格을 維持하려는 獨占規制法의 目的에 일단 違背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狀況에서 不況카르텔은 「獨占規制法」의 窮極的 目的인 消費者保護와 國民經濟의 均衡的 發展, 즉 公共의 利益에 부합되어 違法性이 소멸될 수 있는지가 本質的 問題로 擡頭된다. 본래 自由競爭市場體制에서는 價格變動을 통해서 需要와 供給이 自動的으로 調節되지만, 不況이 深刻해지는 경우에는 市場機構의 自動調節作用은 企業의 集團倒産現象을 招來하여, 當該産業의 景氣回復에 타격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關聯産業에도 重大한 損失이 波及되며 또한 景氣가 回復되더라도 當該市場에는 極少數의 企業만이 殘存하여 競爭機能의 희생이 불가피하게 될 可能性이 있다. 이러한 可能性은 특히 固定費의 比重이 큰 施設集約的 産業에서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不況카르텔은 이와 같은 경우에 國民經濟全般에 대한 惡影響을 縮小시키기 위하여 臨時的·例外的으로 許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不況은 어느 産業에서나 있게 마련인 景氣循環過程의 당연한 한 局面으로서 과거의 景氣上昇過程에서 膨大해진 産業의 脆弱部分을 除去하여 體質을 改善함으로써 다음의 景氣回復에 對備하는 過程으로서 意義를 갖고 있기 때문에 不況期에 安이하게 카르텔을 認可한다면, 過剩設備나 限界의 生産者를 非効率的으로 維持시킴으로써 當該産業의 合理化를 沮害함과 아울러 關聯事業者나 一般消費者의 利益도 侵害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不況카르텔의 認可要件은 엄격하게 設定·運用되어야 하는바, 우리나라에서는 特定한 産業이 不況狀態에 있다고 認定되기 위한 積極要件과 行하려는 카르텔의 內容에 관한 消極要件으로 區分하되 이러한 두 種類의 要件이 전부 充足될 것을 要求하고 있다.

## 2. 積極的 認可要件

獨占規制法 施行令 19條 1項에 의하면 不況 카르텔은 다음의 각 要件을 모두 充足시켜야 한다 :

① 特定한 商品 또는 用役의 需要가 相當期間 繼續해서 減少하고, 그 후에도 그 狀態가 繼續될 것이 明白한 경우

② 當該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價格이 3個月以上 繼續하여 平均生産費를 下廻하고 있는 경우

③ 當該事業分野의 상당수의 企業이 事業活動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企業合理化로서는 第1號 내지 第3號의 事項을 克服할 수 없는 경우

이상과 같이 각각 需給狀況·價格狀況·企

業經營狀況·企業合理化狀況의 4 가지 積極要件의 意味를 吟味하기 위하여 이에 相應하는 日本「獨禁法」24條 3(不況에 對處하기 위한 共同行爲)의 1項의 要件과 比較해 보는 것이 有益할 것이다 :

① 特定한 商品의 需給이 현저하게 均衡을 喪失하였기 때문에

② 當該 商品의 價格이 그 平均生産費를 下廻하며

③ 當該 事業者의 相當部分의 事業의 繼續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④ 企業의 合理化에 의해서는 前號에 揭記된 事態를 克服하는 것이 곤란한 것.

두 나라의 法規定에 나타난 文句만으로 보아도 일단 企業合理化狀況의 要件을 除外하고는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日本에서는 一時的 需給不均衡으로 企業의 收益성이 惡化되고 있는 現在의 景氣循環的(by cyclical) 不況에 대한 일종의 緊急避難의 措置를 상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需要가 과거로부터 미래에 걸쳐 ‘繼續的’인 減少趨勢를 相當期間 明白하게 나타내게 되는 構造的(structural) 不況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또한 日本「獨禁法」24條 3의 2項과 3項을 보면, 不況카르텔의 共同行爲로서는 原則적으로 生産數量·販賣數量·設備制限만을 許容하며, 代價의 決定에 관한 共同行爲는 技術的 理由로 生産數量制限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만 局限되어 許容된다. 그리고 法條文의 뜻으로 보아 監視機關의 設置 등 共同行爲 實施를 위한 附隨的 制限은 包含되지만 販路制限·共販機構의 設置·技術使用의 制限 등은 認定되지 않은 것으로 判斷된다. 왜냐하면 카르텔의 形成으로 回復시켜야 할 것은 우선

需給均衡으로서 이 過程에서 價格水準은 自然적으로 回復되므로 카르텔에 의하여 價格引上을 圖謀하는 것은 진정한 不況克服이 될 수 없으며 또한 販路制限 등이 附隨된다면 不況克服後 競爭構造에 重大한 變化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數量 및 設備의 制限외에 販路카르텔과 價格카르텔을 아무런 但書 없이 許容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점에서 역시 우리나라의 不況카르텔은 構造的 不況을 對象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獨占規制法」12條의 妥當性에 대한 重大한 問題點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이는 아래의 X節에서 再論하기로 하고 본節에서는 認可要件의 內譯만을 「施行令」과 「審査基準」을 중심으로 檢討한다.

(1) 該當業界의 需給狀況의 判斷은 ① 稼働率의 月別 變動 및 ② 生産量·出荷量·在庫量·輸出入量의 月別變動에 대한 각각 最近 1年間の 平均實績値와 向後 1年間の 平均豫測値를 考慮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施行令 19條 1項 1號와 연결한다면, 需要가 最近 1年間 繼續하여 減退하고 向後 1年間도 그 狀態가 繼續될 것이 明白해야 한다.

이 要件에 의하면 우선 向後 1年間の 需要 減退가 明白하게 豫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로 소위 斜陽產業과 같은 構造的 不況産業에서만 可能할 것이다. 또한 過去 1年間 需要가 繼續하여 減少한다는 것이 무엇을 意味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즉, 時間의 경과에 따라 遞減하는 것만을 指稱하는 것인지 아니면 每月別로는 增減의 變動(季節變動 除去後)이 있더라도 最近 1年間の 趨勢가 減少傾向을 나타내면 족한 것인지 分明하지 않다. 이 점은 向

後 1年間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現在 時點의 需要狀態가 繼續 維持되는 것으로 充分한 것인지 아니면 繼續하여 더욱 減少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좌우간 이 要件은 과거 1年間과 장래 1年, 도합 2년에 걸쳐 需要가 감퇴하는 產業이 對象으로 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러한 狀況이 經濟全般의 不況에 起因한다면 이는 巨視經濟政策的 次元의 問題로 되며, 거꾸로 該當 產業에만 局限되는 것이라면 構造不況이 되는 것이므로 역시 景氣循環的 不況「카르텔」로서 對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2) 이 要件은 需要가 繼續 減退하더라도 好況期에서 正常水準으로 復歸하는 것은 除外되고 正常水準以下로 減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價格狀況에 대하여는 製造原價·工場渡總原價·工場渡販賣價格<sup>13)</sup>의 最近 1年間の 月別 平均實績을 考慮하도록 되어 있다. 즉 當該 商品의 去來價格은 工場渡販賣價格으로 하며 生産費는 製造原價를 감안하되 一般管理費·販賣費·支給利子·減價償却費 등을 包含한 工場渡總原價로 한다고 解釋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問題되는 것은 平均生産費의 基準이다.

不況카르텔의 認可가 低能率企業이나 限界企業의 安易한 救濟를 趣旨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低能率企業만으로 카르텔을 構成할 때에는 카르텔 非參加者를 包含하는 全業體의

平均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平均値算出에 있어서도 각 企業의 生産量을 加重值로 한 加重平均方式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第1位 企業의 市場占有率이 매우 높은 경우처럼 特殊한 市場構造를 갖는 產業에서는 單純算術平均이 타당한 경우도 있게 되며, 操業度가 극히 낮은 경우에는 通常의 操業度下에서의 生産費를 考慮하여야 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다.

(3) 事業繼續이 곤란하게 될 우려는 當該 事業分野의 相當數의 事業者에 대하여 發生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企業經營狀況의 判斷을 위하여는 最近 1年間の ① 開業者 및 休廢業者數의 變動 ② 經營實績(主要經營指標) ③ 需要量의 變動에 따른 生産數量 또는 生産設備의 調節可能性(生産彈力性)을 考慮하도록 되어 있다.

이 要件은 ‘相當數’의 事業者를 判別對象으로 하므로 好況時에 殘存할 수 있었던 相當數의 限界企業을 保護하기 위한 裝置로 使用될 餘地가 있다. 모든 企業은 一般的으로 不況期以前의 好況期 및 不況脫皮후에 不況期の 缺損을 補填하기 마련이므로 景氣循環的 不況으로 相當數의 事業者에 缺損이 累積되더라도 이것이 價格機構의 正常的 作用이며 自然淘汰의 당연한 過程이라면 限界企業들을 포함하는 不況카르텔의 認可要件으로 채택될 수는 없다<sup>14)</sup>.

그렇다면 不況期에 相當數企業의 倒産을 防止하려는 것은 好況期에 競爭構造를 維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最近 1年間 需要가 繼續 減退되고 最小限 最近 3個月 동안은 産業平均으로 缺損이 累積되는 認可要件 ① 및 ②의 狀況下에서는 이미 相當

13) 製造原價는 製品의 製造活動과만 관련되어 발생한 原價로서 製造直接費와 製造間接費의 合計이고, 工場渡總原價는 製造原價에 一般管理·販賣費를 가산한 總原價이며 이에 利潤을 가산하면 工場渡價格이 된다.

14) 이와 관련하여 日本法에서는 相當數 대신 ‘相當部分’이라는 表現을 使用하고 있으므로 倒産우려가 있는 事業者의 數뿐만 아니라 質, 不況脫皮후의 競爭狀態 및 需給關係 등을 考慮하고 있는 것은 對照적이다.

數의 非効率的 企業이 倒産하였을 可能性이 크므로(지난 1年間 休廢業者數의 變動을 考慮하는 것은 이러한 觀點을 反映하는 것으로 보임), 나머지 比較的 効率的인 企業들을 保護한다는 것은 寡占構造가 될 뿐이다. 어차피 限界의 企業들은 市場構造의 競爭성과 큰 關係가 없으므로 이들을 維持·溫存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不況카르텔이 公共의 利益에 符合될 수 없는 것이다.

거꾸로 大部分의 企業이 効率的이며 利潤이 매우 낮은 競爭의 市場에 있어서 循環的 不況으로 相當數의 企業이 倒産에 直面하게 될 때에는 오히려 즉시 카르텔을 認可하는 것이 競爭構造의 保存에 도움이 되겠지만, 1年間 需要減退라는 要件은 이를 不可能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要件이 構造的 不況에 대한 것으로 看做할 때에는 대다수의 企業이 窮極의으로 該當 産業에서 離脫해야 하는 産業構造改編過程에서 過當競爭을 防止하려는 目的을 갖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施設廢棄를 前提로 카르텔이 認可되어야만 論理의 一貫성이 있게 될 것이다.

(4) 合理化狀況의 要件은 不況카르텔을 어느 정도 容認할 수 있는 理由가 있더라도 우선은 當該 業界에서 合理化努力을 통하여 不況을 최대한 克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安易하게 카르텔을 形成하려는 것을 防止하고자 하는 趣旨를 갖고 있다. 企業의 合理化라는 것은 企業內部에 있어서 技術向上, 品質改善, 經費節約, 能率增進, 販路開拓 등을 主內容으

로 하는 것으로서 原價節減을 위한 合理的이고 正當한 企業內 努力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審査基準」에서는 이와 함께 該當 業種の 發展趨勢 또는 國際的 狀況<sup>15)</sup>을 아울러 考慮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意味가 分明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령 該當 業種の 長期的 趨勢가 企業合理化를 誘導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効果는 長期에 걸쳐 나타날 것이므로 短期的으로 許容되는 不況카르텔의 妥當性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위에서 例示한 合理化手段 정도로서는 外生的 要因에 의한 不況을 克服하는 것이 항상 不可能할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合理化努力은 局外者가 容易하게 判斷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要件은 該當 企業들에 誠實성을 要求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 3. 消極的 認可要件

施行令 19條 2項에서는 不況카르텔의 認可를 일층 엄격히 하기 위하여 以上の 積極的 要件을 充足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消極的 要件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 19條 1項에서 規定한 經濟與件을 克服하기 위하여 必要한 정도를 超過하지 아니할 것

② 去來條件에 관하여 一般消費者에 대하여 不當한 差別을 두지 아니할 것

③ 共同行爲의 參加事業者間에 共同行爲의 內容에 不當한 差別이 없을 것

④ 共同行爲에 參加하거나 共同行爲로부터 脫退하는 것을 不當하게 制限하지 아니할 것

(1) 첫번째의 消極的 要件은 共同行爲에 의한 競爭制限의 程度·實施期間 등이 不況事態

15) '國際的 狀況'이란 가령 海外市場에 있어서 外國企業들이 投資를 자행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를 줄여 明示할 필요가 있을 것임.

를 克服하기 위한 必要不可缺한 最小限度여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며, 이를 判斷하기 위하여 ① 實施事由와 競爭制限行爲類型的 直接關聯性 ② 需給價格 및 企業經營狀況 등의 最近 3年中 最後 1年을 除外한 平均值와 許容期間의 豫測值를 考慮하도록 하고 있다.

最近 3年中(需要가 繼續減退한) 最後 1年을 除外한 2年間의 平均值는 正常水準의 指標로서 現實의으로 별다른 問題를 惹起시키지 않지만, 許容期間의 豫測值는 카르텔이 없는 現狀態의 延長으로서의 豫測值인지 아니면 카르텔 形成時의 豫測值인지 分明하지 않다. 더욱이 不況카르텔의 核心的 行爲인 價格에 관한 共同行爲가 어느 경우에 必要한 것인지가 明示되어 있지 않으며, 비록 價格카르텔이 許容되더라도 價格을 平均生産費로 引上시키는 것이 必要한 程度에 該當하는지 與否에 관하여 아무런 基準을 提示하고 있지 않다.

(2) 不況카르텔은 價格의 維持·引上이 供給制限등을 통하여 다소간에 一般消費者나 관련 事業者의 利益을 침해하기 마련이지만, 이 要件은 最終消費者인 一般消費者간에 去來條件을 不當하게 差別하지 않는 것으로 規定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판단은 ① 價格差別 ② 數量制限 ③ 引渡條件의 差別與否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價格差別과 引渡條件差別은 일반적으로 不況克服을 위한 手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不當하다면 獨占規算法 15條에 의하여 適用除外됨이 없이 당연히 違法이므로 消極的 要件으로서 舉論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數量制限에 있어서는 일종의 配給狀態

가 초래될 정도로 市場 전체에 걸쳐 供給이 制限되어 있고 그 결과로 價格引上을 도모한다면 이것은 ‘必要한 程度’를 넘는 것이므로 消極的 要件 1號에 위반이 될 것이며, 消費者別로 數量을 差別的으로 制限한다면 역시 價格差別과 같이 不公正去來行爲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要件은 一般消費者에 대한 差別的 취급의 금지라는 것보다는 法的 취지로 보아 一般消費者나 관련事業者에게 價格·數量 면에서 不當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6)</sup>.

(3) 參加事業者간에 不當한 差別을 금지시키는 것은 카르텔 형성 이전에 성립하고 있던 事業者간 市場力(market power)의 관계가 카르텔에 의하여 변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中立的 效果를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差別與否는 特定事業者에만 특히 不利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와 特定事業者에만 特定條件을 부과하는지 여부로서 판단되는데, 몇 가지를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① 價格카르텔 : 결정된 價格이 特定事業者의 製造原價 이하인지의 여부

② 條件카르텔 : 特定事業者에게 새로운 組織 또는 投資가 필요하며 특히 不利한지의 여부

③ 數量카르텔 : 特定事業者에 대하여 그 決定量과 生産能力의 比率이 公正하지 못한지의 여부

④ 販路카르텔 : 去來地域이나 去來相對方에 관한 決定事項이 特定事業者의 工場 또는 需要層과 크게 괴리되는지의 여부

⑤ 設備制限카르텔 : 特定事業者의 既存施設을 運用하는 데 크게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여부

16) 日本「獨禁法」24條 3의 2項 參照.

⑥ 規格카르텔(特化카르텔) : 特定事業者의 대표적인 規格이 무시되는지의 여부

이상의 6 가지 例示의 基準에서 가장 問題時되는 것은 價格카르텔에 관한 것이다. 카르텔 價格이 特定事業者의 製造原價 이하라면 당연히 工場渡原價 이하이므로 그 事業者는 缺損을 갖게 되는데, 이를 不當한 差別로써 規制하는 것은 限界企業을 보호하는 措置가 되는 일면 工場渡原價基準보다는 價格水準이 다소 間に 低下될 수 있으므로 消費者利益의 보호라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不況카르텔이 더 이상의 價格低落을 방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價格의 引上을 초래하는 效果를 갖게 되면 需要가 非彈力的인 경우에는 需要擴張을 통한 不況克服보다는 카르텔을 이용한 利益補填의 結果가 되는데, 이것이 許容되는 것은 積極的 要件 2號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價格—平均生産費의 水準까지이다. 따라서 ‘平均值’를 基準으로 하는 한 이러한 判斷基準은 妥當性を 결여하는 것이며, 不當한 差別중에서 價格과 製造原價의 差異에 관한 基準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不況카르텔의 法益을 一部 事業者에게만 局限시키지 않기 위한 要件으로서 不當한 參加制限 여부는 ① 參加 및 脫退를 制限하는 明文規程의 有無로 판단하며 ② 競爭制限行爲에 參加하지 않으면 i) 原料購入 ii) 製品의 製造 또는 販賣 iii) 製品의 輸送 또는 保管에 關하여 事業을 遂行하기가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判別한다.

## Ⅶ. 合理化 카르텔

### 1. 合理化의 意味

合理化(rationalization)는 일반적으로 生産物 單位當 生産費用이나 分配費用의 저하를 도모하거나 또는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企業이 生産性이나 效率性を 증진시킬 수 있는 措置를 사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合理化는 본질적으로 企業內部에 실현되는 것으로서 企業의 合理化를 목적으로 하는 共同行爲는 企業이 最小의 費用으로 最大의 利益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産業構造의 合理化를 목적으로 하는 共同行爲와는 달리 社會的 費用(social cost)의 절감을 초래하는 한편 그 전부가 반드시 競爭의 制限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런 한에서 獨占規制의 原則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産業 合理化는 한 産業內의 企業들이 서로 다른 費用構造를 가지며 市場狀況으로 보아 모든 企業이 正常稼動을 할 수 없을 때 低費用企業의 操業度を 높이고 高費用企業은 이를 낮추거나 生産을 중단함으로써 産業內의 過當競爭을 줄이면서 結合利潤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므로 당연히 競爭의 實質的 制限을 내포하게 된다<sup>17)</sup>.

### 2. 合理化 카르텔의 類型

許容對象이 되는 企業合理化 카르텔의 類型은 各國의 法制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sup>18)</sup>, 本稿에서 논의된 共同研究와 情報協約 이외에

17) Patinkin(1947), Dewey(1969) 및 筆者(1977) 참조.

18) Edwards(1967) 및 OECD(1976, 1978).

도 다음과 같은 것이 검토의 대상으로 거론되어 오고 있다.

(1) 重複의 回避: 多數 供給者의 分配經路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單純化함으로써 費用을 절감할 수 있다. 平行·重複輸送을 피할 수 있는 直接의 手段은 市場分割이지만 이는 合理化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分配業者數의 制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垂直的·排他的 去來關係를 형성함으로써 競爭制限의 效果가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重複을 회피하면서 競爭構造를 보존시키려면 同一地域에 대한 保管·配達體系를 單一化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2) 資格保證: 該當産業으로의 進入을 카르텔 參加資格의 설정을 통하여 私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로서 競爭 자체만으로는 市場으로부터 無資格·無能力한 事業者를 제거시킬 수 없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이 制度는 무분별한 進入에 따른 社會的 資本의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는 있겠지만, 基準設定이 經濟的 고려보다는 기본적으로 匠人組合的 觀念에 의한 것이라고 볼 때 오히려 革新的 企業을 배제시킬 可能性만 증대시키게 될 것이며, 自由競爭의 가장 중요한 要件인 進入自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3) 浪費除去: 과다한 販賣促進費用이나 購買者에 대한 金錢的 惠澤의 제공(信用貸付·割引·還拂 등)을 제거하여 企業의 費用을 절감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行爲가 市場需要의 현저한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企業間 顧客을 이동시키는 零和的 결과만을 초래한다면 市場에서의 企業의 交渉力을 증대시키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4) 共同營業活動: 多數의 企業들이 공동으

로 필요한 財貨를 구입한다면, 價格割引幅의 증대나 輸送費의 감소 등과 같은 利益을 얻을 수 있으며, 共同販賣에 있어서도 直接的인 競爭에 따른 販賣費用을 절약하고 共同販賣促進으로 市場需要를 증대시키거나 共同在庫管理를 통하여 費用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市場情報의 共同蒐集交換을 통하여 各企業의 生産을 需要變化에 적절하게 적응시킬 수 있는 바, 供給이 不規則인 경우에는 各企業의 生産計劃에 적합하게끔 注文을 配分시킬 수 있으며, 需要가 不規則할 때에는 各企業으로 하여금 遊休施設이 없도록 여러 品種間에 生産을 割當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利點 가운데는 순수한 社會的·經濟的 費用의 절감보다는 交渉力의 증대에 따른 단순한 所得再分配效果에 불과한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共同行爲를 통한 진정한 規模의 經濟를 달성하는 것은 一定水準까지만 가능하다는 一般的인 관찰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5) 專門化: 同種商品市場內에서 個別企業의 品目別 生産量이 작기 때문에 勞動特化度가 매우 낮거나 效率의 生産에 필요한 特化裝備의 經濟性이 없을 때 各企業은 品目間에 專門化(specialization)를 함으로써 平均生産費를 낮추고 利潤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勞動과 機械에 가능한 特化는 일반적으로 大量生産에 있어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專門化 大量生産은 最小效率生産單位의 단순한 重複에 의하는 것이 많다.

또한 專門化企業은 多樣化 企業에 비하여 需給變動이나 生産施設의 反復的 過剩狀態에 의한 충격이 훨씬 크며, 專門化는 이미 확립된 技術의 效率의 使用에 적합할 뿐 새로운 技術의 開發에는 不適當하므로 特化된 施設·裝



置·技術 등은 代替財의 출현과 購買者 選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더우기 專門化企業은 각각의 品目에 있어서 獨占力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人爲的으로 조성되는 것은 自由競爭의 自然的 歸結에 의하여 성립되는 專門化와는 다른 效果를 갖게 되므로 專門化카르텔은 극히 例外的으로 認可되어야 할 것이다.

(6) 單純化와 標準化: 品種數를 줄이는 單純化(simplification)와 品目別 規格을 통일시키는 標準化(standardization)는 專門化와 마찬가지로 企業生産活動의 多樣性을 축소시킴으로써 費用節減에 기여할 여지를 갖는다. 그러나 專門化의 경우에는 市場內의 商品多樣性을 반드시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單純化에 있어서는 目的 자체가 商品多樣性을 줄이는 것이므로 차이가 있게 된다. 單純化는 市場의 透明性을 높이는 일면 商品多樣性을 감소시킴으로써 消費者效用에 利害得失의 效果를 초래하기 때문에 消費者利益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標準化는 商品의 代替性을 확보하며 品質向上에 기여함과 아울러 企業相互間의 競爭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競爭制限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다.

## 2. 外國의 法例

(1) 西獨의 「競爭制限禁止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1980年 4次 改正)에서 合理化카르텔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同法 5條 1項에서는 商品의 統一規格을 적용하는 標準化카르텔을 前提條件 없이 허용하고 있으며, 5(a)條에서는 實質的인 競爭이 市場에 계속 존재한다는 條件下에서 專門化카르

텔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立法態度는 위에서 밝힌 筆者의 見解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條 2項에서는 그밖에 一般的으로 許容對象이 되는 合理化카르텔을 定義하여, ‘經濟活動을 合理化하며 參加企業들의 效率性이나 生産性을 技術的·經濟的·組織的 觀點에서 현저하게 증대시킴으로써 需要의 滿足을 改善시키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카르텔이 需要者에 미치는 窮極的 效果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同條 3項에서는 合理化를 價格協定이나 共同購買 및 販賣機構(syndikat)의 설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우는 合理化가 그 밖의 다른 수단으로만은 달성될 수 없고 合理化가 公共의 利益이라는 觀點에서 바람직할 때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規定은 기본적으로 利潤增大를 목표로 하는 企業들이 순수한 價格協定과 같이 市場內 競爭에 영향을 주는 方法보다는 生産이나 分配의 效率性을 증대시키는 方法을 통하여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需要滿足의 改善이라는 것은 合理化 카르텔의 결과 商品價格에 변화가 없다면 品質 등 成果의 향상을 기해야 하며 거꾸로 成果에 변화가 없다면 價格下落을 수반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合理化의 혜택이 消費者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5條 2項과 3項에는 得失比較原則을 도입하여 合理化의 效果가 競爭制限 效果에 비하여 적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合理化 카르텔의 效果가 카르텔 參加者間에 競爭이 排除되는 정도 및 非參加者로부터의 競爭의 힘과 비교하여 妥當性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共同販賣機構를 갖

는 카르텔의 경우에 參加者間的 모든 競爭이 실제로 排除되고 동시에 외부로부터도 상당한 정도의 競爭에 직면하지 않게 된다면 비록 生産 및 分配費用의 절감이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共同販賣나 共同購入이 허용되려면 그 자체로서 費用節減을 초래하여 合理化를 구성해야 한다. 예컨대, 構成員이 각각의 販賣組織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덜어 줌으로써 그 費用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各企業이 專門化할 경우 全品目販賣를 위하여 共販機構가 필요하듯이 다른 合理化 措置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手段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共販制度에 있어서 각 構成員이 각각의 生産量의 전부 또는 特定量을 共販機構를 통해서만 販賣해야 한다는 義務가 없다면 그 자체로서는 競爭制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日本은 「獨禁法」 24條의 4에서 企業合理化 카르텔을 不當한 去來制限에 대한 適用除外로서 인정하고 있다. 合理化 카르텔의 行爲內容으로서는 同條의 2項에서 ① 技術 혹은 生産品種의 制限 ② 原材料 혹은 製品의 保管이나 運送施設의 利用 ③ 副産物, 쓰레기 혹은 廢物의 利用이나 購入에 관한 共同行爲로 한정시키고 있다<sup>19)</sup>. 이 規定에서 우선 特徵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西獨法에서처럼 비록 例外的이더라도 價格에 관한 共同行爲나 共同販賣行爲를 인정하지 않고 순수한 費用節減이나 浪費除去를 위한 行爲에만 局限되어 있다는 점이다.

技術의 制限에 있어서 '技術'은 經營技術이

나 販賣技術을 의미하지 않고 生産技術을 의미하므로 이 行爲는 구체적으로 舊式設備의 使用制限, 粗惡原材料의 使用制限, 試驗測定方法의 統一 등을 지칭하며, 技術의 進步 내지 改善을 저해하는 行爲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生産品種의 制限에 있어서 規格標準化 카르텔이나 最低品質保障 카르텔처럼 카르텔 參加者間에 대하여 制限의 內容이 같은 경우에는 競爭制限의 效果가 거의 없겠지만, 生産專門化 카르텔처럼 參加者間에 있어서 制限의 內容이 다른 경우에는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品目別로 生産의 集中을 초래하여 競爭制限을 誘發할 위험이 크므로 극히 制限的인 경우에만 認可하는 경향이 있다.

共同保管 및 運送은 規模의 經濟를 통한 費用節減을 目的으로 하는 것으로서 물론 出荷量이나 販賣對象의 制限이 수반되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副産物·쓰레기·廢物의 共同利用 및 購入은 이들을 일정한 使用目的에 적합할 수 있는 商品으로 轉換시킴으로써 그 利用價値를 높여 企業收益을 도모하는 것으로 共同加工이 대표적 경우이며 역시 그 製品의 共同販賣는 合理化 行爲에서 排除하고 있다.

### 3. 「獨占規制法」의 認可要件

「獨占規制法」 12條에 대응하는 「施行令」 20條 1項에서는 '技術의 向上·品質改善·原價引下·能率增進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産業合理化를 위한 共同行爲'를 인정할 수 있는 積極的 要件으로서

① 共同行爲 以外の 方法으로는 合理化의 達成이 곤란한 경우

② 共同行爲에 의한 合理化의 效果가 큰 경우

19) 同條 1項의 合理化 目的과 3項의 消極的 認可要件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큰 差異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음.

③ 競争制限을 금지하는 效果보다 合理化의 效果가 큰 경우  
를 規定하고 있다. 同條 2項에서는 消極的 認可要件으로서

① 需要者 및 關聯事業者의 利益을 不當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 共同行爲의 參加事業者間에 共同行爲의 內容에 不當한 差別이 없을 것

③ 共同行爲에 參加하거나 共同行爲로부터 脫退하는 것을 不當하게 制限하지 아니할 것

④ 生産品種을 制限하는 경우 特定品種의 生産이 不當하게 特定事業者에게 集中되지 아니할 것

의 네 가지를 지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2號 및 3號는 각각 不況카르텔 認可의 消極的 要件 3號 및 4號와 같은 것이며, 나머지 要件도 이미 不況카르텔과 關聯하여 간접적으로 論議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의 言及을 생략하기로 한다.

「審査基準」에 의하면 積極的 要件에 있어서 合理化 카르텔의 必要性 與否는 ① 營業種類 및 生産品種 ② 製造方法 및 特許權의 概要 ③ 生産設備의 種類·形式 및 能力 ④ 各 事業者의 工場 또는 事業場의 所在地 ⑤ 流通段階別 經路 및 費用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合理化效果에 관한 2號 및 3號 要件은 ① 當該 商品의 生産量·出荷量·在庫量 및 輸出入 物 量의 月別變動 ② 主要 原價項目 및 原單位의 變動 ③ 工場渡 販賣價格의 變動 등에 관한 최근 1年間의 平均値와 아울러 ④ 合理化實績 및 向後的 計劃 ⑤ 當該業種의 發展趨勢 및 國際 的 狀況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우리나라의 合理化카르텔 法制에는 크게 네 가지 問題點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獨占規制法의 정신으로 보아 適用除外 對象으로 될 수 있는 것은 企業合理化 카르텔임에도 불구하고 産業合理化 카르텔을 認可對象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産業合理化는 産業構造改編을 위한 企業間 施設稼働率調整 내지 施設遊休化를 의미하는데, 비록 用語의 誤用이라고 인정하더라도 「審査基準」에서는 法11條 1項 5號(設備의 新增設 制限)가 設備稼働制限 및 設備共同廢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獨占規制法」의 테두리 안에서 産業構造調整을 다룰 수 있다는 重大한 可能性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法 11條 1項의 6가지 共同行爲 類型을 각각 不況카르텔과 合理化카르텔에 固有한 것으로 分類·指定하지 않고 있으므로 實 際적으로는 이러한 두 가지 카르텔을 區分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예로서, 設備의 新增設制限이 合理化의 內容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構造的 不況을 前提로 해야 하므로 同一한 共同行爲가 不況克服과 동시에 不況·好況與否와 관계없는 合理化의 目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우기, 日本法에서는 合理化 카르텔에 共同價格行爲와 販賣行爲를 전적으로 排除하고 西獨法에서는 이를 부득이한 경우에만 許容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制限이 없는 特徵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法制下에서는 合理化를 위하여 價格카르텔·販賣카르텔과 같은 古典的 形態의 競争制限行爲가 濫用될 여지가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施行令 20條 1項의 積極的 要件인 補充性 原則(1號)과 比較較量原則(2號 및 3號)의 符合與否를 판단하는 審査基準이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補充性 原則을 예로 한다면, 共同行爲 以外的方法으로는 ‘技術向上·品質改善·原價引下·能率増進’ 등 合理化의 達成이 곤란한 것을 立證해야 하므로, 그러한 目的의 妥當性은 2號 및 3號 要件으로 판단하더라도, 일단 合理

化를 위한 個別企業의 個別的 手段의 種類 및 効果와 이에 대응하는 카르텔의 共同手段과 効果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카르텔의 不可避性을 論證해야 할 것이다.

## ▷ 參 考 文 獻 ◁

李奎億, 『市場構造와 獨寡占 規制』, 韓國開發 研究院, 研究叢書 18, 1977.

\_\_\_\_\_, 「우리나라 카르텔의 現況과 對策」, 『韓國開發研究』, 第1卷 第3號, 韓國開發 研究院, 1979.

加藤良三, 『市場構造と獨禁法』, 東京, 千會書 房, 1976.

根岸 哲, 「獨禁法適用除外規定の位置づけ」, 『公正取引』, 1969年 12月號.

今村 成和, 「投資調整と政府の介入」, 『公正取 引』, 1965年 5月號.

\_\_\_\_\_, 『私的獨占禁止法の研究(三)』, 有斐 閣, 東京, 1969.

\_\_\_\_\_, 『獨占禁止法』, 有斐閣, 東京, 1978.

金澤良雄, 『經濟法』, 有斐閣, 東京, 1980.

丹宗昭信, 『獨占および寡占市場構造規制の法 理』,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1976.

\_\_\_\_\_, 「特定不況産業安定臨時措置法と獨 占禁止法」, 『公正取引』, 1978年 7月號.

新野幸次郎, 「獨禁法改正によせて」, 『經濟評 論』, 1974年 12月號.

實方兼二, 「獨禁法と公共の利益」, 『公正取引』, 1970年 1月號.

越後和典, 「不況カルテルと獨禁政策」, 『公正 取引』, 1972年 12月號.

日本經濟法學會編, 『獨占禁止法講座 II: 獨占』, 商事法務研究會, 1976.

正田 彬編, 『カルテルと法律』, 東洋經濟新報, 東京, 1978.

\_\_\_\_\_, 『全訂獨占禁止法: I』, 日本評論社, 東京, 1981.

出雲井正雄, 『新獨占禁止法の解説』, 時事通信, 東京, 1953.

Areeda, Phillip, and Turner, *Antitrust Law: An Analysis of Antitrust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Vol. II, Lexington, Mass.: Little, Brown & Co., 1978.

Dewey, D., *The Theory of Imperfect Competition: A Radical Reconstruc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_\_\_\_\_, “Information, Entry, and Welfare: The Case for Collu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December 1979.

Edwards, Corwin D. *Control of Cartels and Monopolies*, Dobbs Ferry, N.Y.: Oceana Publication, Inc., 1967.

Elzinga, Kenneth G., “Defining Geographic Market Boundaries”, *Antitrust Bulletin*, Winter 1981.

Gold, Bela, “Changing Perspectives on Size, Scale, and Returns: An Interpretive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March 1981.

McBride, Hart E., “The Nature and Source of Economies of Scale in Cement Production”, *Southern Economic Journal*, July 1981.

Norman, G., “Economies of Scale in the

- Cement Industr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June 1979.
- OECD, *Guide to Legislation on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Paris, 1976.
- \_\_\_\_\_, *Comparative Summary of Legislations on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Paris, 1978.
- Patinkin, D., “Multiple-Plant Firms, Cartels, and Imperfect Competi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ruary 1947.
- Richardson, G.B. “Price Notification Schemes”, *Oxford Economic Papers*, November 1967.
- Walker, Geoffrey de Q., *Australian Monopoly Law*, Sydney: Griffin Press, 1967.